

1. 개정이유

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화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건설공사”를 “건설공사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) 영 제17 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 의 건설공사를 말한다.	제3조(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<u>건설공사</u>	4. ----- -- <u>건설공사(「자연재해대책 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재 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)</u>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